# 희귀•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

### 1. 산정 특례 제도

- ✓ 어떤 제도 인가요?
  - 희귀·중증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**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**해주는 제도 (산정특례 적용 전의 본인부담률 : 입원 20%, 외래 30~60%, 약국 30~50%)
- 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-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 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
- ✓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

✔어떻게 신청하나요?



5년에다 재신형 통한 경선 필요 (6세월명의 파뉴실환의 경우, 1년마다 경선 필요) 질병관리청 > 지원사업 > 산정특례제도 > 소개 (as of 2023-03-07)

#### 2. 본인부담상한제도

- ✓ 어떤 제도 인가요?
  - 1년간 (1/1~12/31) 환자가 지출한 급여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, **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**



국민건강보험공단 > 정책센터 > 국민건강보험 > 보험급여 > 의료비지원 > 본인부담액상한제제도개요 (as of 2023-03-07)

## 3.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
- ✓ 어떤 제도 인가요?
  -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시회·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·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
- 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- **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** 1,189 개 중 하나를 진단 받은 자
  -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
- ✓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- 해당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면제
- ✓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환자중심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  - 통장사본 1부(환자명의)
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- 진단서 1부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
- 작동차보험계약서 1부 (자동차 소유자)
  - 금융재산관계 서류
  -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  - 장애정도 확인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

※ 등록 시,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, 2년마다 재신청 (정기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한 갱신 필요)

질병관리청 > 지원사업 > 의료비지원사업 소개 (as of 2023-03-07)

# 4. 차상위 본인부담 상한제

- ✓ 어떤 제도 인가요?
  - 회귀난치성·중증질환자·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고,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(부양의무자 기준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)
- 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
가구 규모	지역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 <b>인</b> (2023년 기조)
환자가구소득 (50%)	전체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	4,053,758

- ✓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  - 의료 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

대상	지원내용		
희귀 난치성•중증질환자	요양급여비(입원, 외래 면제)		

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. 보건복지부. 2023 : 9,75

